의안번호	2209105
의 뢰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03.24.
추계번호	25E17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―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로 4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6,162억원, 2029년 3조 726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11조 3,612억원(연평균 2조 8,40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8조 4,868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조 8,744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)	−26,162	−27,602	−29,122	−30,726	−113,612	−28,403
− 국세(74.7%)	−19,543	−20,619	−21,754	−22,952	−84,868	−21,217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6,619	−6,983	−7,368	−7,774	−28,744	−7,186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5호	○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 −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−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5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, 각각의 최근(2019~2023년)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

○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은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

○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(신고 기준)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,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

❑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동 제도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

○ 적용대상은 비료[1], 농약[2], 경운기 · 트랙터 · 콤바인 등 농업기계, 양돈케이지 · 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,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등임

1)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2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

❑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9년 18,770억원, 2023년 2조 3,047억원 등으로 집계

○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2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조세지출액	18,770	17,763	18,481	21,886	23,047

주: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❑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,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.4%,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.3% 수준으로 집계

[표 3]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: 2019~2023년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농·축산·임업용(제105조제1항제5호)	95.8	95.8	96.0	95.8	96.4
어업용(제105조제1항제6호)	4.2	4.0	4.2	3.6	3.3

주: 공급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, 전체 조세지출액 중에서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액을 구분함

○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(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)에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

[표 4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
어업용 기자재	794	715	784	794	772

❑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9년 3조 726억원 등으로 추정

○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7,976억원에서 2023년 2조 2,275억원으로 2019~2023년 5년간 연평균 5.5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5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5.5

○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 5.5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6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4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23,502	24,796	26,162	27,602	29,122	30,726

❑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로 4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6,162억원, 2029년 3조 726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11조 3,612억원(연평균 2조 8,40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8조 4,868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조 8,744억원 감소 예상

[표 7]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)	−26,162	−27,602	−29,122	−30,726	−113,612	−28,403
− 국세(74.7%)	−19,543	−20,619	−21,754	−22,952	−84,868	−21,217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6,619	−6,983	−7,368	−7,774	−28,744	−7,186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−6788−4647	hkkim@assembly.go.kr